

상주-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
변경 실시 협약

2013. 11. 15.

국 토 교 통 부  
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

## 변경실시협약

국토교통부(이하 “주무관청”이라 한다.)와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(이하 “사업시행사”라 한다.)는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(이하 “본 사업”이라 한다.)과 관련하여 2008년 12월 31일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(이하 “실시협약”이라 한다. 이후 변경된 실시협약 포함)을 체결하였던 바, 동 사업을 진행하던 중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[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-250호(2010년 12월 23일) 및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-44호(2012년 2월 15일)]에 따라 실시협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15일 다음과 같이 본 변경실시협약 (이하 “변경실시협약”이라 한다.)을 체결한다.

### 제 1 조 (정의)

본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본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### 제 2 조 (해지시지급금 산정)

실시협약의 <별표 13>(해지시지급금)을 본 변경실시협약의 <별표 1>(해지시지급금)으로 변경하며, 실시협약 제66조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내 용	변 경
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13 (해지시지급금)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.	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<변경실시협약 별표1> (해지시지급금)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.

### 제 3 조 (실시협약의 효력변경)

실시협약의 규정은 본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본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,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. 다만,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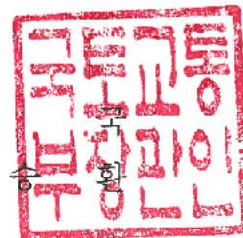
### 제 4 조 (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)

이 변경실시협약은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로 하여금 아래 기재 일자에 이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11월 15일

대한민국  
국토교통부장관 서



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 
대표이사 엄진우

